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및 주요지적 사례 안내



목 차



1.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2.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주요지적 사례

3. 관련 서식



1.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1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목적

2020. 1.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2020. 1. 1.부터 지급된 모든 공공재정지급금 대상)



2020. 1.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법 률 제 2 0 4 2 6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 관리체계를 확립

“ 공공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제1장제1조(목적)

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등 하면?

환수
(이자포함)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형사처벌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 정의 (금품의 범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2조 제5호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연구개발비등),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보훈급여금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금품 등
(청년수당, 유아학비, 출산장려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4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한국
세상

행정청 · 부정수익자 (법 적용 대상)



“ 행정청 ”

법 제2조제2호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부정수익자 ”

법 제2조제8호

- 부정이익을 얻은 자
- 국회 등 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는 제외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

* 부정이익: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 (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5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부정청구등’ (위반유형)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6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 부터 적용

부칙(법률 제16323호, 2019. 4. 16.)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는 경우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7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 우선적용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5조제1항~9항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 명단공표
- 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 부정청구등의 죄에 대한 형사처벌

예시

방과후과정 교구비

유아교육법

반환(환수) O | 제재부가금 X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학교자율공간혁신
사업 운영비

교육시설법

반환(환수) X | 제재부가금 X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법

반환(환수) O | 제재부가금 O

8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처분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

허위청구,과다청구

부정이의
환수
이자포함

법 제8조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5배

법 제9조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법 제16조

형사처벌

법 제28조의2

법의실효성확보장치

9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부정이익등의 환수



10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신상

부정이의등의 환수 (금액 산정)

부정이의의 금액

허위청구

제공받은 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목적외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금액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연 3.5%

이자계산기간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 개월 수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으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자 환수

※ '오지급'의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 부과

11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부정이익등의 환수 (금액 산정)



부정이익등의
환수

+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



부정이익 + 이자

지급결정 취소

시행령 제5조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 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

행정청의 과실
100%

12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제재부가금의 감면 사유

행정청 사전 통지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원금 + 이자)을
모두 반환한 경우

조사 전 자진신고

면제

조사 후 ~ 환수처분
사전 통지 전 자진신고

50% 감면

*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수처분을 하기 전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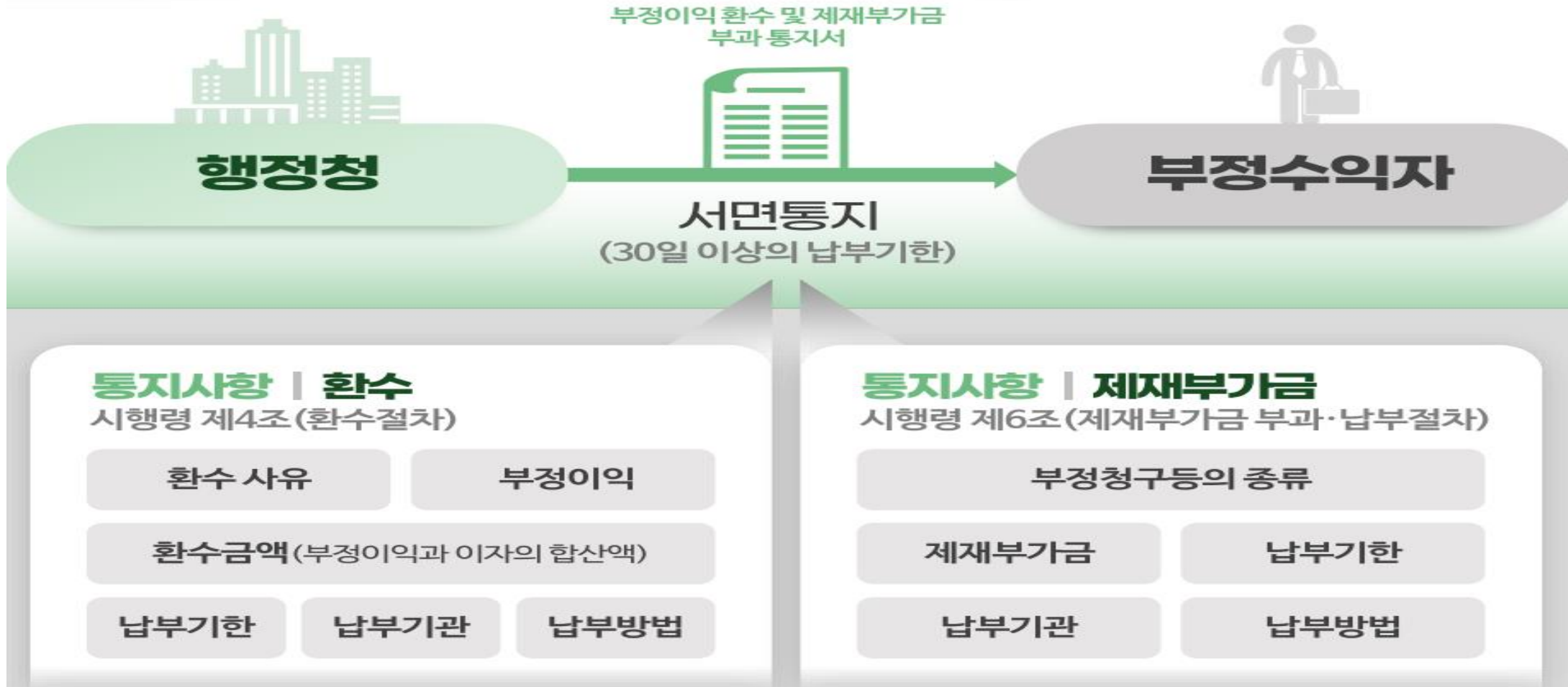
제재부가금
감경 · 면제

제재부가금 부과액

제재부가금 산정액에서
벌금 + 과료 + 몰수 + 추징 + 과징금 + 과태료를 제함

1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14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한국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절차

미납 시



가산금 징수

1주일 이내
납부

체납금액
x1%

1개월 이내
납부

체납금액
x2%

1개월 이후

1개월마다
1%가산

※ 단, 이자율 5% 및 징수기간 60개월 초과불가

독촉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압류, 매각 등)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등)



15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조사 실시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
-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
관련자

✓ 조사 절차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사무소, 사업장
출입조사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절차 준용
-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관계공부 등 열람·복사, 등·초본 발급 요청 가능(법 제14조)

16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명단 공표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 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이익가액의 합계
3천만원 이상

심의위원회
심의

소명절차

명단공표

- 구성 :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행정청의 부기관장

위원장

고위공직자* 3명 이내, 민간전문가 5명 이내

*기초자치단체: 5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위원

- 임기 : 3년 (위촉위원은 1차례 연임 가능)

-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5일 이상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기간 : 1년 간 (미납시 계속 공표)
- 방법 :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매년 3월 31일 까지)
- 공표내용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기관, 법인, 단체는 대표자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용

17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기록 · 관리

행정청은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내역을 기록 · 관리



참고 서식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등
기록관리대장
관련 예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재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 ✓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 ✓ 처분일
- ✓ 처분대상자
- ✓ 처분사유
- ✓ 처분금액 및 납부기한
- ✓ 명단공표 방법 등
- ✓ 기타

19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부정청구등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허위청구



허위청구자 &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



과다청구자 &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적외사용



행정처분만
환수,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오지급



행정처분만
환수

20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처리 방법 · 절차 등 준용



21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 요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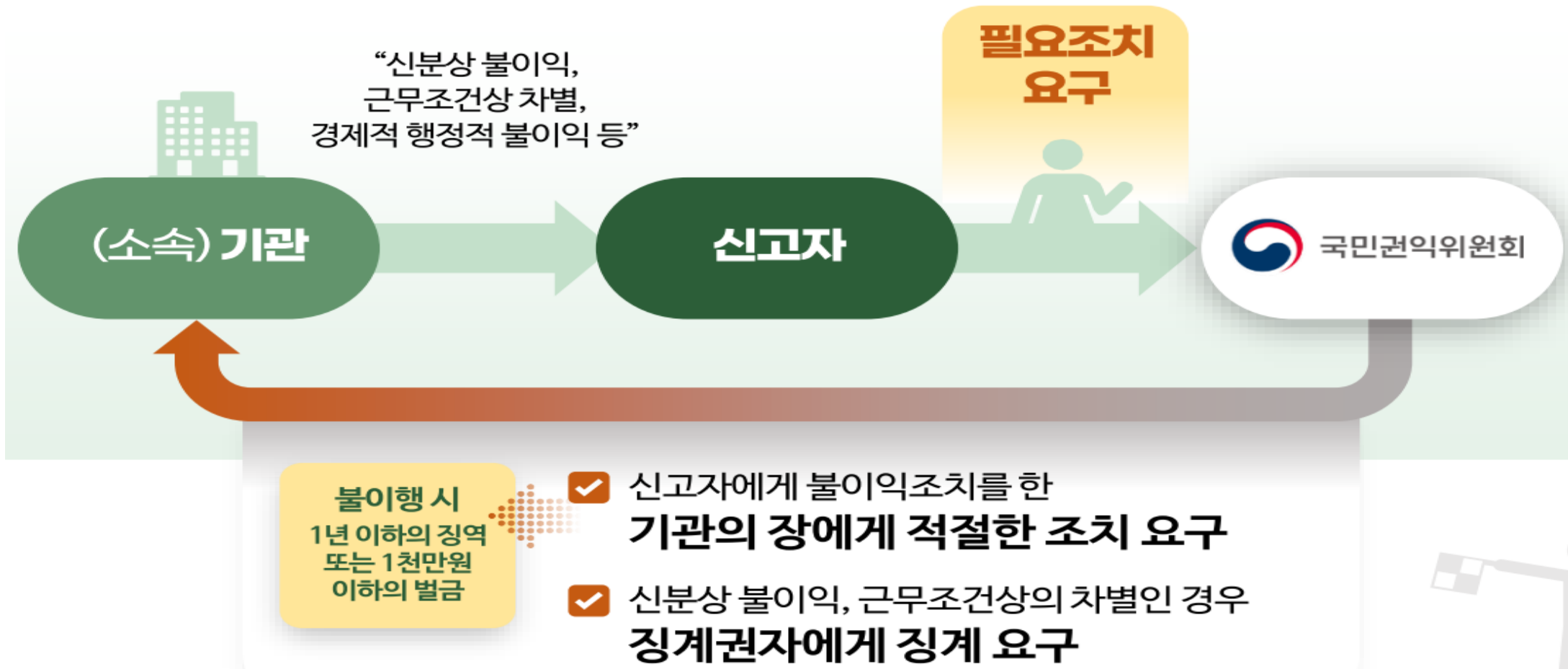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22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신상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2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신고자(협조자)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반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요구
가능

24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신상

신고자 보호 | 신변보호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 신변 포함



25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청렴
세상

신고자 보상 · 포상



26

공공재정지급금 범위 및 2025년 본예산 중 공공재정지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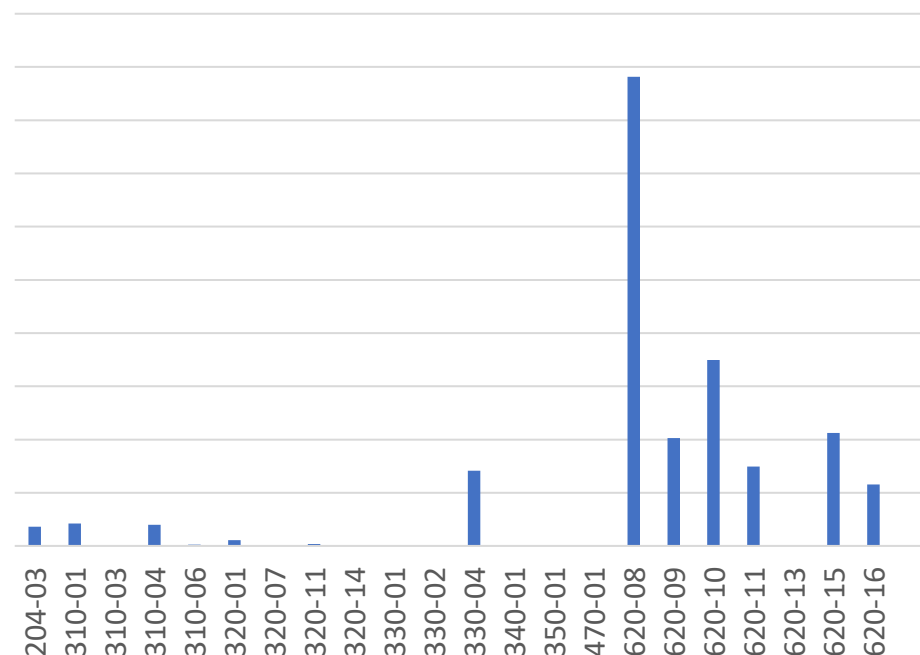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5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교육자치단체 소관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	340-01 해외경상이전
310-03 포상금등	350-01 출연금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10-06 기타보전금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20-07 이차보전금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320-14 민간자본보조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2025년 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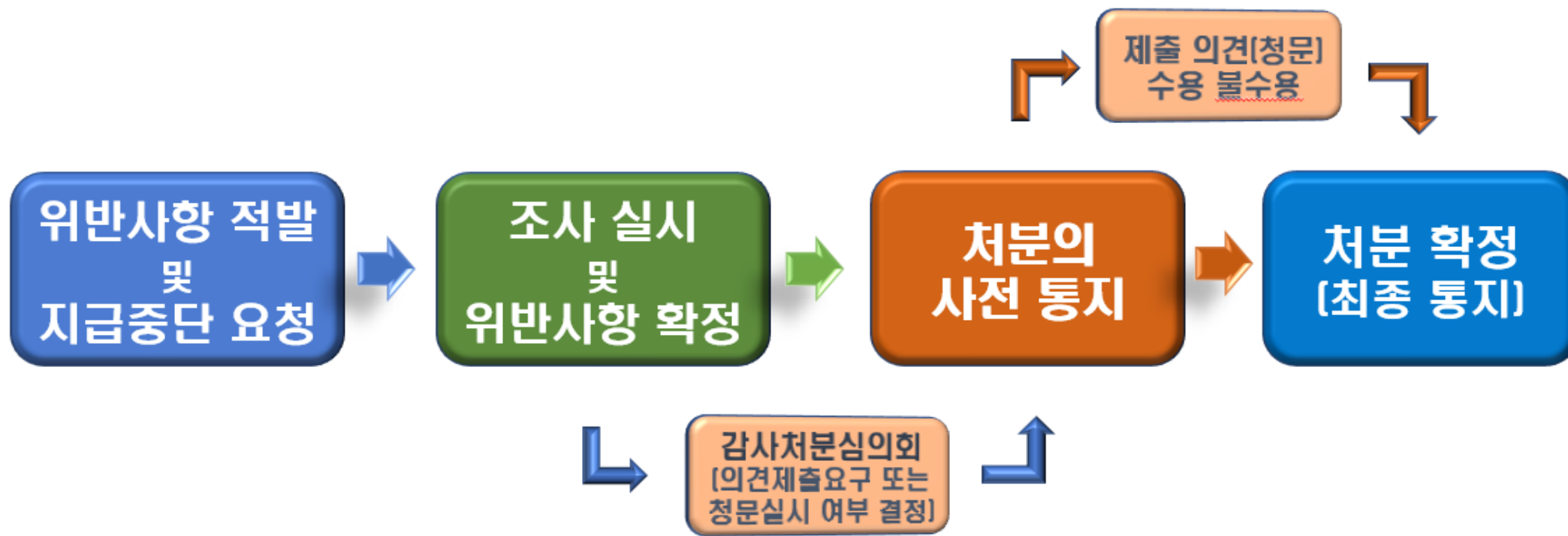
500,000,000,000
450,000,000,000
400,000,000,000
350,000,000,000
300,000,000,000
250,000,000,000
200,000,000,000
150,000,000,000
100,000,000,000
50,000,000,000
-



27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청렴
세상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처분 절차



27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처분 절차

1 위반사항 적발 및 지급중단 요청

▲ 위반사항 인지 · 적발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 종합감사, 자체 점검 등을 통한 **위반사항 확인**

* 단순 민원, 경미한 사항은 해당 부서 처리,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사관 처리
(감사관-12454, 2020. 10. 29.)

▲ 지급 중단

- (지급 중단)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중단 통지) 지급 중단 사유와 이의신청 기한 등 반드시 안내하여 방어권 보장

27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처분 절차

2 조사 실시 및 위반사항 확정

▲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 관련자
- (조사 방법) 관련자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
- (출입 조사) 출석, 진술 등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위반사항 확정

- 부정청구 등 법 위반 사유, 위반 유형, 부정이익금, 이자,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관련자,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여부 등 검토 후 내부 확정

27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처분 절차

3 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 진행(의무)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의견제출) 실시
단,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다른 법령 등의 사례를 고려하고 행정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청문실시) 결정
- 의견제출 기한은 당사자등이 의견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설정(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활용 가능)

27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처분 절차

4 처분 확정 및 통지

▲ 당사자등 의견제출 반영

-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영,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와 근거, 증빙자료 등 제시 필요

▲ 환수처분 확정 · 통지

- (처분 확정) 지급 결정 취소, 범죄혐의 통보, 처분 통지 등
- (통지 사항) 환수사유,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 납부기한, 납부기관, 납부방법 등
- (이자 부과)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적용하여 계산

27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처분 절차

청렴
의사

5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

- 처분(지급중단,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

▲ 이의신청 결정

- 30일 이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2.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및 지적사례

1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Q. 사립유치원이 지원금 교부 조건에 사전 동의 후 교부받았으나
이후 지원조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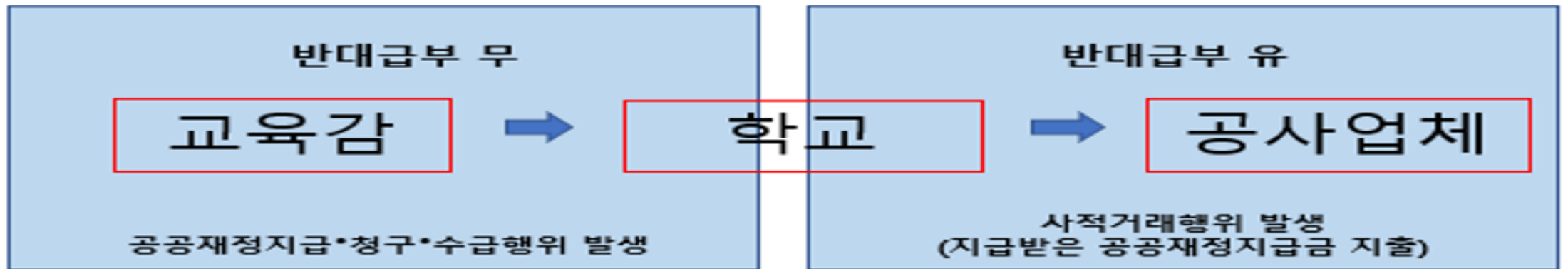
**A. 사립유치원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유아교육비를 청구한 이후에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금을 추가 징수한 경우, 위 시점(지원
조건 위배) 이후의 유아교육비 청구는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Q.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2024. 9. 27.) 이후, 공공재정
지급금 지급일에 따른 국공립학교 부정수익자 포함 여부?**

**A. 공공재정환수법 부칙에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여,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기준이 아닌,
부정청구를 적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Q. 공사 준공정산을 잘못하여, 과다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학교 담당자를 부정청구(오지급)등을 한자로 보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A.



공공재정지급금 지출 과정에서 사적 거래행위에 있어도, 지출 (청구)한 자의 부정이 있다면, 이 법 제재를 받음

4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Q.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공공재정지급금 횡령 사실 적발 시

A.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주체는 교육청, 지급받은 주체는 학교임

학교의 허위, 과다 청구는 없었고, 또한 학교에서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이 아니므로, 공공재

정지급금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Q. 오지급일 때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귀책사유의 범위**는?

A. 오지급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Q. 정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계약법에 따라**
계약하였을 경우 적용 배제 대상인지?

A.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집행 과정에서
수익자인 학교의 부정청구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법 적용 받을 수 있음

Q.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서류를 잘못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허위, 과다 청구된 경우

A. 보고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정지급금이 결정되므로,

보고 행위는 청구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함

1. 허위 청구

- 실제 활동하지 않은 ○○ 방역활동 인력 봉사료 부정수급
-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A교사에게 ○○수당 지급

2. 과다 청구

- ○○사업비 집행 · 정산 소홀로 다음 분기 동일 사업비 과다 청구
- ○○사업비 신청 시 공사 면적을 부풀려서 사업비를 많이 교부받음

3. 목적 외 사용

- ○○공사로 교부받은 목적사업비를 □□공사비로 집행
- ○○업체에 대가 지급 후 돌려받은 후 법정부담금 납부 및 개인적 사용
- ○○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동일 법인 □□학교 공사비 집행
- 학교법인 부담 경비를 재정결함보조금(운영비)로 집행

4. 오지급의 경우

- 기간제교사 등 호봉 획정을 잘못하여 급여 과다 지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데도 부양가족수당 지급



3. 관련 서식

서식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원
⑤ 이자			원
⑥ 환수금액(④+⑤)			원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⑧ 납부할 금액(⑦+⑥)			원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금원, 공채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불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 지급중단 ☐ 환수 처분 ☐ 제재부가금 부과 ☐ 가산금 체납처분		
이의신청 사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①	년	월	일 까지
	가산금 ②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금액 계(①+②)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까지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장		직인		

서식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금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적 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	(전화번호:)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미 청림의 대표기관 **경남교육**!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자부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